

문서번호	일자리경제담당관-116527
결재일자	2015.10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동작구청장 방침 제152호

주 무 관	시장 활성화팀	일자리경제 담당관	부 구 청 장	동 작 구 청 장
김한수	이수희	민영기	정연찬	10/22 이창우
협 조	규제개혁팀장		강성문	
	주무관		김경문	

「동작구의회 의원발의」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안) 검토 보고

발 의 자 : 김순희 의원 외 11명

제안이유 :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인 육성·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

주요내용

- 시장의 개설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6조)
-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11조)
-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 ~ 제26조)
-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9조 ~ 제34조)

검토의견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

일자리경제담당관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)	
사업추진유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탐조 ()
이해관계인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안) 검토

김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안)』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

I 개 요

-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- 발 의 자 : 김순희 의원 외 11명
 - 최만규·김재열·서정택·전갑봉·김명기·최정아·김현상·이봉준·강한옥·신희근·김주은 의원 공동발의
- 제안이유
 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체계적인 육성·관리
 -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주요내용
 -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3조)
 - 시장의 개설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6조)
 -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11조)
 - 임시시장의 개설·신고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 ~ 제18조)
 -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 ~ 제26조)
 -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27조 ~ 제28조)
 -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9조 ~ 제34조)
 -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(안 제35조 ~ 제39조)

제정 필요성

○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위기 지속

- 대형마트, SSM(super-super market) 등에 밀려서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

※ 유통업태별 연도별 매출액

(단위 : 조원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전통시장	21.4	21.0	20.1	19.9
대형마트	38.0	42.1	44.2	45.1
백화점	24.7	27.5	29.0	29.7
슈퍼마켓	29.9	32.4	34.0	35.8
온라인마켓	29.1	32.2	35.8	38.4

○ 우리구 전통시장(상점가)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음

- 전체시장 16개소중 전통시장(상점가) 8개소, 무등록시장 8개소

- 2015년내 2개소(남성역골목, 성대전통) 등록예정, 3개소 등록 준비중

※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개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

전통시장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

- ◆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
- ◆ 전통시장 예산지원 근거 마련으로 전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
- ◆ 시설 및 경영현대화 촉진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

조문검토 : 특이사항 없음

관계법령 저촉 여부

○ 상위법령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저촉되는 바 없음

Ⅲ

영향 분석

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전통시장은 영세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생업을 위한 수단 및 고용기회 제공으로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있음
-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역할 수행
 - 전통시장은 주택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 제공
 - 전통시장의 보호육성은 서민층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

-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상인회 위탁관리 근거 마련
 - 2016년 건립예정인 남성시장 고객센터를 비롯하여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할 전통시장 내 각종 시설물을 상인회에 위탁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
- 전통시장 업무의 명확한 기준 제시
 - 상위법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)에 규정되지 않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전통시장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
 - ※ 전통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과 부지가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명확한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있음(공공건물, 주택, 공장, 복지시설, 학원, 연구시설, 임시 가설물 등)

Ⅲ

검토 결과

- ▣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으며,
- ▣ 우리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전통시장 육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적극 동의함.

붙임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. 끝.